

—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3년 3월 17일

나. 제 안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03년 3월 18일

라. 상정일자 : 2003년 3월 21일

제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조 훈 영

나. 제안이유

- 관계법령 개정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자동차세 감면에 대한 추정 규정 등 현행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기 위하여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

다.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차량을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정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 제3조)
- 노인복지시설 대한 감면대상의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자를 노인복지시설 운영자로 확대 함(안 제6조)
-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경감방법을 과세표준액의 50%에서 각각 재산세의 100분의 50,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안 제9조)
- 수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으로 조문 정비(안 제12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조문 정비(안 제16조)
-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7조)
-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법인 등이 지방으로 이전시 감면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2005.12.31까지 연장함(안 제25조)

라. 참고사항

- 조례개정 관련법 : 노인복지법, 수산물품질관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 도 세정 13400-13066(2002.12. 7)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이 춘 배

- 경상북도 시·군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 안에 의거 구미시세 감면조례 중개정조례 안임.
- 지방세법 관계법령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차량의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정하는 단서조항 삭제와 노인복지시설 운영자 확대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조문정비 개정 조례 안임.
- 수도권정비계획법에의한 지방 이전시 감면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2002. 12. 31에서 2005.12.31까지 연장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 정 이 유

관계법령 개정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자동차세 감면에 대한 추징규정 등 현행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행정자치부(경상북도) 시세감면조례표준안 통보에 따른 개정 사항 임.

2. 주 요 골 자

- 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차량을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 제3조)
- 나. 노인복지시설 대한 감면대상의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자를 노인복지시설 운영자로 확대함(안 제6조)
- 다.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경감방법을 과세표준액의 50%에서 각각 재산세의 100분의 50,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안 제9조)
- 라. 수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으로 조문 정비(안 제12조)
- 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조문 정비(안 제16조)
- 바.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7조)
- 사.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법인 등이 지방으로 이전시 감면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2005.12.31까지 연장함(안 제25조)

3. 참 고 사 항

- 가. 노인복지법
- 나. 수산물품질관리법
-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 마. 도 세정 13400-13066 (2002. 12. 7)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로 한다.

제17조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2002년12월31일”을 “2005년12월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illegible]

현행	개정(안)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u>유료노인복지시설</u> 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u>유료노인복지시설</u>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u>노인복지시설</u> ----- ----- <u>노인복지시설</u> ----- ----- ----- -----.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① (생략)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u>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u>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u>농수산물가공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u> 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 ----- ----- ----- <u>농산물가공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u> ----- ----- ----- ----- ----- -----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6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 <u>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② <u>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u>	제16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 <u>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② <u>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u>
제17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u>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u> 1. ~ 2. (생략)	제17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u>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u> ----- ----- ----- ----- 1. ~ 2. (현행과 같음)

